

다대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의견

의안번호	198
------	-----

접수년월일 : 1993. 10. 18

소개 의원 : 한 정 동

□ 제 안 이 유

다대동 홍티부락은 낙동강 하구 매립지와 육지부분사이의 수로와 연결된 공유수면으로 당초 하구둑 공사 실시계획 인가시 생업터전 상실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현재 저습지로 방치되어 있어 수질이 매우 오염된 상태로 자연매립으로 인하여 많은 빈지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이 요청되는 공유수면임

□ 주 요 곁 자

홍티부락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민들이 원하는 부산시 장애인 연합회로 하여금 매립 가능토록 관계 부서에 건의 요망

□ 관 련 법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청 원 서

수 신 : 사하구의회 의장

제 목 : 다대 흥티부락앞 공유수면 매립건의

평소 존경하옵는 김삼현 사하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신뢰와 감사한 마음을 전하옵니다.

아래 청원인들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흥티 어촌계 어민들로서 저희들의 절박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선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어업을 천직으로 삼아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고저 땀을 쏟으며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몇 차례의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평화로운 어촌이었습니다만 낙동강 하구둑 공사 이후 생활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큰 명분 앞에 많은 어장의 손실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까지는 참고 견딜수가 있습니다만 수자원 개발공사의 매립공사를 마을앞 빈지를 제외함으로 해서 이곳이 각종 부유물의 집합지로 전락하여 이 일대가 온통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악취와 주변환경이 급격히 불결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년전 현지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 해운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우리 어민전체의 의사를 결집하여 신청한 바 있으나 시 관계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좌절되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 보존지역이라는 명분아래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뜻과 바람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사하구의회가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이 간곡히 바라옵건대,

저희 어민들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심속의 오지인 이곳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을 부산장애인연합회로 하여금 매립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보호자립장을 마련토록 하고 아울러 우리 어민들의 어구손질 등을 할 수 있는 물량장도 확보하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하옵니다.

1993. 10.

사하구 다대동 산 2번지 흥티부락
어촌계 청원인 대표 박 용 웅
김 용 칠

붙 입 : 어촌계원 연서날인 명부 1부

청 원 소 개 의 건 서

청 원 인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산2번지 흥티부락
	성 명 : 박 용 웅 외 주민 60명
건 명	흥티부락 공유수면 매립건의의 건
소 계 년 월 일	1993. 10. 18

소 개 의 건

- 낙동강 하구 매립지와 육지부부 사이의 수로와 연결된 공유수면에 위치한 흥티부락은 당초 하구둑 건설사업 구역에 제외되어 자연 매립으로 발생된 일부 빈지를 포함한 저습지로 주변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주거지는 대부분 국유지와 공유수면을 점하고 표고가 낙동강 하구매립지 보다 현저히 낮아 해수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수질이 심히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개발이 요청되는 공유수면임.
- 따라서 현지의 여러가지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88년도부터 동 지역에 대한 매립면허를 해운항만청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주민자력개발 불가라는 방침아래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공공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지시 되었으나 구자체 타당성 검토에 따라 투자비 과다소요로 공영개발사업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동 지역에 대한 매립면허가 부산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명분에 의한 부동의에 따라 불허된 사항으로 구자체 매립사업계획이 더이상 추진되지 않을 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5조에 의거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매립면허를 하는 방안으로 적극 수용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개의원 : 한 정 동 의원 (인)